

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제 10 장 자격시험

제42조(구분) ①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.

②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[개정 2013. 3. 1.]

1. 외국어시험 : 매년 4월, 10월에 실시한다.
2. 전공종합시험 : 매년 4~5월, 10~11월에 실시한다.

③ [삭제 2013. 3. 1]

④특수대학원은 제 42조 ②항 1호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다. 다만,, 학위논문제출 희망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부과한다.[개정 2013. 3. 1]

제43조(자격시험)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다음과 같다.

①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수학기간 중 소정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3학기 이상 등록하고,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3개의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신학대학원은 전공종합시험 5개 과목을 선택 할 경우 논문을 면제한다.[개정 2013. 3. 1]

②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수학기간 중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5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5개의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세칙은 「자격시험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
